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94호 2013. 12.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1호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313호 손실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7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3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317호 경서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 28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24외 2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3-11-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연희동 808-1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24	2010.11.05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원창동 390-27	북항로 116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검암동 611-1	승학로506번안길 3	2009.08.28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연희동 747-1	연희로39번길 19	2010.11.05	연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연희동 747-2	승학로287번길 13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가좌동 152-21	가정로77번길 12	2009.08.28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경서동 964-1	청라커널로223번길 19	2011.06.29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연희동 727-12	연희로28번길 13-8	2010.11.05	연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경서동 673-54	로봇랜드로249번길 114-12	2009.11.05	로봇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10	인천 서구 경서동 965-4, 965-5	청라루비로42번길 5-9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원창동 390-2	북항로 76-60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12	인천 서구 마전동 1018-3(403동)	완정로7번길 18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마전동 1018-3(404동)	완정로7번길 6-13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 서구 원당동 824-1	고산후로121번안길 35	2008.11.21	고산후로12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15	인천 서구 금곡동 418	봉화로223번안길 19	2009.08.28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 서구 마전동 914-5	완정로178번길 18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 서구 마전동 1027-4	완정로45번길 7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 서구 오류동 410-243	원당대로 111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9	인천 서구 마전동 1063-7	원당대로685번2길 5	2008.12.31	원당대로685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 서구 마전동 923-3, 923-4	검단로487번안길 11-9	2008.12.31	검단로487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1	인천 서구 당하동 1083-6	청마로93번길 28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3-11-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2	인천 서구 금곡동 577-3	신동길 87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23	인천 서구 오류동 601	단봉로 190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24	인천 서구 오류동 649, 647-1	봉화로85번길 38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 서구 오류동 410-58, 410-52	검단천로 354	2009.09.22	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	
26	인천 서구 마전동 1005-2	완정로34번길 57-30	2012.05.24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 서구 오류동 410-16	검단천로356번길 8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인천 서구 오류동 410-36	도담4로 11	2012.10.25	도담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3. 11.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3외 1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3-11-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11-1	승학로506번안길 3	2013-11-29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연희동 727-12	연희로28번길 18-8	2013-11-29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원창동 381-2	북항로 14	2013-11-29	건축물 멸실	
4	인천 서구 원창동 381-1	북항로 26	2013-11-29	건축물 멸실	
5	인천 서구 원창동 381-1	중봉대로 353	2013-11-29	건축물 멸실	
6	인천 서구 원창동 381-1	원석로 174	2013-11-29	건축물 멸실	
7	인천 서구 가좌동 178-75	봉수대로 123	2013-11-29	건축물 멸실	
8	인천 서구 석남동 650-91	건지로95번길 35	2013-11-29	건축물 멸실	
9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2-21블럭	검단로102번길 19	2013-11-29	주출입구 변경	영풍정공
10	인천 서구 불로동 437-1	검단로755번길 18	2013-11-29	건축물 멸실	
11	인천 서구 왕길동 583-1	원당대로302번길 17	2013-11-29	건축물 멸실	연백상회
12	인천 서구 오류동 410-480	원당대로205번길 30	2013-11-29	건축물 멸실	
13	인천 서구 오류동 410-481	원당대로205번길 28-1	2013-11-29	건축물 멸실	
14	인천 서구 오류동 601	백석산로 27	2013-11-29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1호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09.11.17일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3. 12. 0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조합명칭

- ①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② 조합명칭 :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①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 ② 면적 : 20,439.5㎡

3.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 ① 조합 설립인가 취소일자 : 2013. 12. 02
- ②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313호

손실보상계획및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79(2013. 9. 5.)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번지]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m ²)	사업시행자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3년 ~ 2014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번지	총 면 적 : 346 금회시행면적 : 34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개별토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대면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상세내역 별첨 참조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13. 12. 2. ~ 2013. 12. 16.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560-4852)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내역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

- 물 건 : 윤인상 소유 추정 경작물[상세내역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 비치]
- ※ 지형지물 상 분간하기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물건도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5. 기타사항

-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세부조서를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을 소유자 및 관계인께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전화 : 032-560-4852)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제출하시면 조서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3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고, 일부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개선 (안 제2조)
 - ‘인천시에서 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 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함.
- 금고지정 평가기준 합리적 정비 (안 제3조 및 [별표1],[별표2])
 -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일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안전행정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정비함.
- 금고지정 공고방법 등 개선 (안 제6조 및 제7조)
 - 금고지정 제안서 제출시 및 현행 시보, 구 공보를 통한 공고방법을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하고, 금고 지정결과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12.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1,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제1항에 따른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그”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같은 항 제5호 중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로,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인정한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4월전까지 시보·구 공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를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보·구 공보”를 “구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중도해지등”을 “중도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서구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
가.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의 하한을 배점한도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점)**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 금고(이하 “금고”라한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금고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p>	<p>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 ----- ----- ----- ----- ----- -----.</p> <p>제2조(금고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p>

3. · 4. (생략)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 사업 추진능력

② (생략)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한다) -----

3. · 4. (현행과 같음)

5. -----협력 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 따라 -----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 과반수 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⑤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4월전까지 시·보·구 공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그 밖-----
----- 인정한 경우-----

-----.

제6조(지정절차) ① ----- 제2조제1항에 따른 -----

-----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
여야 -----.

② ----- 제1항에 따른

-----.

③·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시에서 시금고를 약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구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서구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③·④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구보-----해당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등) ① --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성 등-----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8조의2(금고운용 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를 -----

제8조의2(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에 -----

-----.

제9조(수당 등) -----
----- 위원에게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10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u><신설></u>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u>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BIS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		- BIS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			
<u><신 설></u>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9점)로 평가</u>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			
- <u>무수익여신비율</u> (건전성)	(7)		- <u>고정이하여신비율</u> (건전성)	(7)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			
<u><신 설></u>			<u>※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 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u>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u>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u>	3		<u>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u>	3			

현 행				개 정 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				19	
	가. <u>관내지점현황</u>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u><신 설></u>	5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u>관내지점의 수</u>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u>※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u>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9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10	
	가. <u>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u>	5		5. <u>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u>	가. <u>지역사회에 대한 기여</u>	5	
나. <u>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u>	5		나. <u>구와 협력사업</u>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317호

경서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1호(2010.12.27.)로 개발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경서2구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변경(입안)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구역명칭 : 경서2구역(변경없음)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변경없음)
- 나. 면 적 : 34,025㎡(변경없음)
- 다. 시행기간 : 2008.12.08. ~ 2015.12.08.(변경없음)
- 라. 인구수용계획
 - 당 초 : 252세대, 683인
 - 변 경 : 421세대, 1,075인(증169세대, 392인)
- 마. 용적률 및 개발밀도
 - 당 초 : 173.2%, 총밀도 200인/ha
 - 변 경 : 215%, 총밀도 316인/ha(증 41.8%, 116인/ha)
- 바. 기타사항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변경없음)
-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변경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4783)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